

「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8. 1. 18. 개정 판 (시행 2018. 1. 18.) → 2018. 5. 1. 개정 판 (시행 2018. 5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72/compare?from=856&to=96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29:0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의5(추천위원회) ①추천위원회는 <u>삼육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</u>에 둔다. (개정 2007.12.26., 2015.1.22.)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5.1.22.) 1.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. 중 <u>삼육대학교</u> <u>고등학교운영위원회</u>에 추천하는 자 1인 3.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(개정 2015.1.22.)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1.22.)	제24조의5(추천위원회)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. (개정 2007.12.26., 2015.1.22., 2018.05.01.)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5.1.22.) 1.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. 중 <u>삼육대학교</u> <u>고등학교운영위원회</u>에 추천하는 자 1인 3. 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 (개정 2015.1.22.) ④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1.22.)
제110조(평의위원회의 구성) ①평의위원회는 교원.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09.2.16.) 1. 교원 5인 2. 직원 3인 3. 학생 1인 4. 동문 1인 5.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10조(평의위원회의 구성) ①평의위원회는 교원.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09.2.16., 2018.05.01.) 1. <u>삼육대학교</u> 가. 교원 4인 나. 직원 2인 다. 학생 2인 라. 동문 1인 마. <u>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인</u> 2. <u>삼육보건대학교</u> 가. 교원 3인 나. 직원 3인 다. <u>조교 1인</u> 라. 학생 2인 마. 동문 1인 바. <u>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</u>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5제1항 중 "삼육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"를 "대학평의위원회"로 하고, "2015.1.22.)"를 "2015.1.22., 2018.05.01.)"로 한다.

제1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평의원회는 교원.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09.2.16.,2018.05.01.)

1. 삼육대학교

가. 교원 4인

나. 직원 2인

다. 학생 2인

라. 동문 1인

마.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2인

2. 삼육보건대학교

가. 교원 3인

나. 직원 3인

다. 조교 1인

라. 학생 2인

마. 동문 1인

바.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

부 칙

이 정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